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 부승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996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5
2.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7
3. 국유재산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로 확대	10
4. 비축계획에 따른 정부비축 및 일반업체의 비축.....	13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부승찬의원 등 12인
- 2) 발의연월일 : 2026. 3. 31.
- 3) 회 부 일 : 2026. 4.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정부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부품 공급망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방산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비축원자재 대부 대상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업체에 대한 비축원자재 대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분석·관리 및 정부비축 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

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

나.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급망 조사·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취득 자료의 활용 및 보호, 관련 업무 비용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다. 기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된 비축 원자재 대부분을 일반업체로 확대함(안 제45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계획에 따른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하고, 일반업체에게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Ⅲ. 검토의견

1.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방위산업체 등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이러한 공급망 안정화 계획에는 방산물자 등 수급현황, 소재·부품 조달방안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①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로 지정된 군수품에 대한 수급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소재·부품 조달방안 및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지원 등을 포함하여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관계 중앙행정기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현행	개정안
	다른 국방과학연구소 및 그 밖의 관련기관에 제1항에 따른 수급현황 확인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방위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방위산업체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항의 자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습득한 자료 및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내용, 방법,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견진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19년), 코로나 팬데믹('20년), 요소수 대란('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22년) 등 일련의 공급망 교란 사태를 겪으며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국가 경제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는 점에서 시장경제의 자율적인

1) 첨단산업 핵심원료 수출 통제(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미국, 네덜란드 등),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일본) 등 최근 외부 공급망 충격이 빈번함.

경제안보 이슈	관련국	주요 내용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2019.7)	일본	·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수출 규제 · 한국을 일본의 무역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코로나 팬데믹(2020.2)	중국, 미국, EU	·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중국의 봉쇄정책으로 마스크, 와이어링 하네스, 차량용 반도체 등의 수급에 차질 발생 · 미국, EU 등의 코로나 백신 수출 통제로 국민 생명 위협

대처만으로는 공급망 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추진해 왔음.²⁾

정부는 이른바 ‘공급망 3법’³⁾을 제·개정하여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전략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를 제도화하였음.

□ 위와 같은 범정부적인 공급망 안정화 움직임에 발맞춰 방산 분야에서는 공급망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3 ~ ’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내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 연례화 과제를 수립하였음.⁴⁾

즉, 국내 방위산업 공급망의 신뢰성 제고 및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방위산업 공급망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방위산업 공급망의 취약점 파악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임.⁵⁾

경제안보 이슈	관련국	주요 내용
요소수 대란 (2021.11)	중국	·예기치 못한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 ·중국의 석탄 수급 차질로 인한 요소 공급 부족으로 요소 수출을 통제 ·범용적 제품이라 할지라도 특정국에 과다 의존하고 있는 품목이 단절될 경우, 경제 안보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022.2~)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 발생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공급하는 주요 원료 및 중간재 수급에 차질 발생 ·국가 간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특히 우크라이나의 주력 수출품인 밀의 경우 일부 국가에 식량 위기를 초래

2)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4.12,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강화」 기본방향 설정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4)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5) 더불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13번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을 통해 100대 무기체계 소재·부품에 대한 공급망 조사·분석 업무에 추진력이 더해짐

그러나 현행법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부품의 공급망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에 대응하고 무기체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일정한 제약이 있음.

-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사항을 조사·분석하고, 안정화 계획 수립에 따른 중장기 공급망 안정화 대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유사 입법례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공급망 조사·분석의 수행기관, 절차 및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2.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현행	개정안
<신설>	제30조의2(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①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에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제2항에 따라 확보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방기술품질원이 활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은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③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연구의 수행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에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은 관련 자료 및 정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0조의2).

□ 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부터 외부 공급망 위험에 따른 무기체계의 전력화 및 방산 수출 영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 사업⁶⁾을 추진하고 있음.⁷⁾

동 사업은 1년 단위로 연간 10~20개 무기체계에 대해 소재·부품 단위까지 수급 이슈를 조사·분석하여 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국방기술품질원은 2025년도에는 10개 무기체계에 대한 공급망 조사·분석을 수행하여 대응방안을 도출하고, 2026년도에는 22개 무기체계⁸⁾에 대한 공급망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 대상 등 계획]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대상 장비	수리온 등 10종	425사업 등 22종	무기체계 20종	무기체계 20종	무기체계 30종

6) 「방위사업법」 제32조제6항제5호 “군수품의 품질보증 및 방산물자의 품질경영 등에 대한 업무 지원”을 근거로 함.

7) 현행 방산물자 부품공급망 연례조사·분석 개요

- 내용: 연례적으로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에 대한 소재·부품 수급 이슈 및 방산물자 지정 존속 필요성에 대한 조사·분석 수행함. 연간 조사 규모는 (무기체계) 10~20개, (방산물자) 300~400개임.

구 분	사업 개요	'26 예산(억원)	'27 예산(억원)
방산물자 부품공급망 연례조사·분석	- 공급망 조사분석 수행 인건비 (출연금 7.33억, 6명) - 방산물자 현황분석 인건비 (출연금 3.67억, 3명) - 공급망 조사분석을 위한 업체 연구용역비(출연금 10억) - 관련기관 자문료 등 (출연금 0.63억)	11.63	21.63
경제안보품목 국내 공급망 구축	- 선도사업자 선정 및 지원사업(수입선 다변화, 생산기반 지원, 기술개발, 비축관리) 관련 운영비 (출연금 34.86억) * 지원사업 34.26억원, 관리비(회의, 자문, 출장 등) 0.6억원	31.86	34.86
소재·부품 비축원자재 관리사업	- 비축 원자재 관리 인건비 (출연금 1.14억, 1명) - 사업운영비 (출연금 0.36억) - 경제안보품목 및 원자재 신규비축 (자산취득비 7.5억)	9.00	9.00

8) 대상장비 : 소형무장헬기(LAH-1), K9자주포, 레이저대공무기 등 22종

진도	완료	진행 중	예정	예정	예정
----	----	------	----	----	----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 재구성

□ 국방기술품질원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무기체계 공급망을 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하려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첫째, 공급망 충격에 대한 사후대응이 아니라, 사전 조사·분석과 데이터베이스 마련을 통한 조기경보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음.

둘째, 국방기술품질원은 현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산사업으로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동 업무의 근거와 주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작용의 법적 안정성과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셋째, 국방기술품질원의 위탁과 관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분야별 전문센터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분야별로 발생하는 단종, 납기 지연 등의 수급 애로를 분석하기에 적합함.

또한 국방기술품질원은 군수품 품질보증과 이에 수반되는 부품 단종관리, 신뢰성 연구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공급망 조사·분석 등의 수행에 용이할 것으로 보임.

3. 국유재산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로 확대

- 개정안은 정부가 일반업체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연구·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 (생략)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방산물자의 생산·연구·시제품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다.	② -----방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 ----- ----- ----- -----.
③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이나 물품을 그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방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 현행은 국유재산의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일반업체 등 구분]

구 분	정 의
방산업체	방산물자 ⁹⁾ 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지정된 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군수품 ¹⁰⁾ 을 납품하는 업체로서 방산업체 또는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

이로 인해 예컨대 일반업체가 비축원자재 대상인 희토류¹¹⁾나 핵심광물(니켈·코발트·망간 등)을 활용해 생산한 부품·장비를 방산

9) 「방위사업법」 제34조(방산물자의 지정)①방위사업청장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무기체계로 분류되지 아니한 물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에 대하여는 이를 방산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방산물자는 주요방산물자와 일반방산물자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10) 「군수품관리법」 이 법에서 "군수품"이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와 육군·해군·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

1. 현금
2.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에 기탁하여야 할 유가증권
3.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

11) 희토류는 란타넘계 원소 15종과 스칸듐, 이트륨을 포함한 총 17개의 금속원소를 말함. 지각에는 비교적 존재하지만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이 드물고 분리·정제 공정이 매우 어려워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로 불림. 특히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은 고성능 영구자석, 디스프로슘·터븀은 내열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로, 유도무기, 레이더, 항공기, 함정, 드론 등 군용 장비와 이중용도(Dual-use) 품목에 폭넓게 사용됨.

중국은 세계 희토류 광산 채굴의 약 60~70%, 분리·정제의 약 90%를 차지하는 등 희토류 생산 및 정제·분리 공정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으며, 2025년부터 일부 중희토류와 희토류 자석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업체(무기체계 연구개발·양산업체)에 납품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반업체는 비축원자재를 대부받지 못하여 부품 등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개정안은 다양한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외국 수출통제 등으로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업체에도 비축원자재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망 회복 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어 적절한 것으로 보임.

4. 비축계획에 따른 정부비축 및 일반업체의 비축

□ 개정안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으로 하여금 방산물자 생산을 위한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비축계획에 따른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하며, 일반업체에게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

현행	개정안
<u>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 방산업체는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55조(원자재의 비축) ①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1. 비축 목표에 관한 사항</u> <u>2. 비축품목의 종류·물량에 관한 사항</u> <u>3. 정부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과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에 관한 사항</u> <u>4.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축 필요 사항</u> <u>5.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u>

현행	개정안
	<u>항</u> ②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는 제1항의 비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업체로 하여금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방위사업법」에는 ‘방산업체의 비축’에 대한 근거는 있으나 ‘정부의 비축’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방산업체 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는 실정임.

다만, 방위사업청은 방산지원 제도의 일환으로 1970년대 율곡예산 173억원을 투입하여 원자재를 비축한 이후, 방산물자 생산에 원자재가 필요한 방산업체에 이를 대부하는 ‘정부비축’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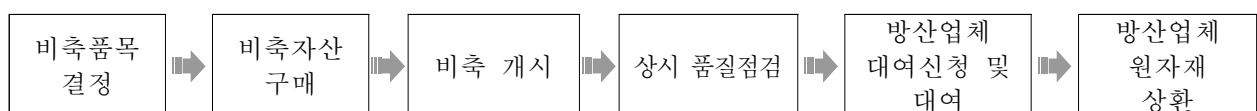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현재 430억원 규모를 운영 중이며, 특히 2026년에는 수출통제 등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비축 품목 확대를 위하여 신규 예산 7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음.¹²⁾

- 공급망 조사·분석을 통한 자료를 토대로 공급망 위험평가 후 공급망 위험이 높은 부품 등에 대해서는 비축, 비용지원 등 공급망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무기체계 공급망 대응방안]

순	공급망 대응방안	내 용
1	비축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원자재 및 부품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활동
2	원자재 국산화 활성화 및 생산·시험평가 비용 지원	수입대체 효과가 큰 원자재 및 국내 생산설비 구축 비용이 큰 제품군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활동
3	경제안보품목 지정 ^{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공급망 위험 품목에 대해 경제안보품목을 지정하여 공급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활동

12) 방위사업청 비축 품목을 결정 및 구매한 이후,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방산업체에게 원자재를 대여함. 절차는 다음과 같음.



4	대체 공급원 확보 및 기술변경	단종정보 및 대체 공급원 정보 획득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공급망 위험을 감소시키는 활동
5	재고 일괄확보	단종 또는 단종예상 품목 중 재고 일괄확보가 가장 경제적인 경우, 재고 일괄구매를 대응 수단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위험 감소
주)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업무 1. 방산물자 공급망 연례 조사분석 (국방기술품질원) 2. 경제안보품목 국내 공급망 구축 (국방기술진흥연구소) 3. 소재·부품 비축 원자재 관리 (국방기술품질원)		

*자료: 국방기술품질원 제출 자료 재구성

□ 개정안은 비축계획 수립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과 정부 및 일반업체의 비축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다만, 국방부는 다음의 점에서 비축 품목을 개정안의 ‘원자재’에서 ‘원자재 및 부품 등’으로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개정안 제30조제1항은 ‘원활한 소재·부품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 제55조제1항제4호에서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축 필요 사항”을 포함해 비축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 제55조는 비축계획의 대상을 ‘원자재’로 한정하고

있음. 방위산업의 특성상 원자재의 확보만으로 필요한 부품을 적기에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일부 핵심 부품은 장기간의 조달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축 대상을 핵심 부품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원자재 및 부품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¹³⁾

문 의 처
02)6788-5312

13) 최근 주요국 수출통제 및 공급망 위협 요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산분야 경제안보품목*을 포함한 주요 소재·부품 비축범위 및 비축량 확대를 국정과제(113-5 “방산 공급망 안정화 및 자립성 강화”)로 추진 중임. * 「공급망안정화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부품, 설비, 기기 장비 등으로서,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에 필수 불가결한 것